

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
(김대식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2863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9. 10.

발 의 자 : 김대식 · 고동진 · 김선교
윤영석 · 송석준 · 윤한홍
박충권 · 김상훈 · 이주영
김정재 · 김위상 · 이만희
서지영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기후변화와 도시화에 따른 대규모 홍수에 적절하게 대응함으로써 도시하천 유역의 침수피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.

최근 특정지역에서 발생한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도시하천이 범람하고, 배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큰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. 지난 5년간 도시지역 집중호우로 인해 전국에서 138명이 사망하였음. 또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집중호우 복구비용만 7조 원 가량의 국비와 지방재정이 투입되었음. 이러한 상황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평소 침수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을 상습침수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련 정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일정 강수량 이상 발생 시 반복적으로 도시침수로 인한 침수

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상습침수지역으로 지정하고, 상습침수지역 정비대책의 시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습침수지역에 대하여 사전에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(안 제2조제2호의2, 제3조제3항 및 제12조의2 신설).

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

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의2. “상습침수지역”이란 일정 강수량 이상 발생 시 반복적으로 도시침수로 인한 침수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.

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국가는 침수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신속히 대응·복구하여 국민이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2장에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2조의2(상습침수지역의 지정) ① 환경부장관은 일정 강수량 이상 발생 시 반복적으로 도시침수로 인한 침수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할 시·도지사와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습침수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습침수지역의 지정이 시급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상습침수지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요청하는 경

우에는 관할 시·도지사의 협의를 거쳐야 하고, 지정된 상습침수지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부장관에게 상습침수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상습침수지역 정비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때에는 상습침수지역 지정 후 상습침수지역 정비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.

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상습침수지역 정비대책의 시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⑤ 환경부장관은 상습침수지역의 지정사유가 없어지거나, 지정 유지의 필요성이 현저히 감소하는 등 지정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.

⑥ 상습침수지역의 지정기준, 지정·지정해제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	제2조(정의) ----- ----- ----.
1. · 2. (생략)	1. · 2. (현행과 같음)
<u><신설></u>	<u>2의2. “상습침수지역”이란 일정 강수량 이상 발생 시 반복적으로 도시침수로 인한 침수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.</u>
3. ~ 5. (생략)	3. ~ 5. (현행과 같음)
제3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) ① · ② (생략)	제3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
<u><신설></u>	<u>③ 국가는 침수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신속히 대응·복구하여 국민이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u>
<u><신설></u>	<u>제12조의2(상습침수지역의 지정)</u> <u>① 환경부장관은 일정 강수량 이상 발생 시 반복적으로 도시침수로 인한 침수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할 시·도지사</u>

와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습침수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습 침수지역의 지정이 시급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상 습침수지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·도지사의 협의를 거쳐야 하고, 지정된 상습침수지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 부장관에게 상습침수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상습침수 지역 정비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때에는 상습침수지역 지정 후 상 습침수지역 정비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.

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상습침수지역 정비대책의 시행

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
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⑤ 환경부장관은 상습침수지역
의 지정사유가 없어지거나, 지
정 유지의 필요성이 현저히 감
소하는 등 지정의 해제가 필요
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
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.

⑥ 상습침수지역의 지정기준,
지정·지정해제 절차 및 그 밖
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
로 정한다.